

식품접객업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 예정사항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(시설기준) 및 같은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81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전 청문통지를 실시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11 일

서대문구청장



1. 공 고 기 간 : 2019. 09. 11. ~ 2019. 09. 26
2. 청 문 일 시 : 2019. 09. 27. 17:00까지
3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시설물 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
4. 공고내역

업종	신고번호	업소명	영업자	생년월일	소재지	위반내용
일반	2002-0066813	미소네	장정*	63.02.05	증가로10길 12 (남가좌동)	영업시설물 전부 철거

5. 처분의원인이된사실 : 영업 시설물 전부 철거
6. 처분하고자하는내용 : 영업소폐쇄
7. 법 적 근 거 :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
8. 의 견 제 출

가. 기 관 명 : 서대문구청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(연희동))

나. 부서명 및 담당자 : 보건위생과 하금숙

다. 연 락 처 : 전화번호 330-8971 / FAX 330-8987

라. 유의사항

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